



유자녀를 위한 정서적 지원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청년멘토 활동에 관심있는 대학(원)생을 모집하여 유자녀와 1대1로 매칭하여 학습지원, 상담, 문화활동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가정 유자녀 (초등 3학년 ~ 중등 3학년)
- **운영기간** : **신청** 3월 **활동기간** 4~12월



국가미래산업 체험

장래 진로 결정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국가미래산업 체험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지원가정 유자녀 (고등 1학년 ~ 고등 2학년)
- **운영기간** : **신청** 6월 **활동기간** 8월



※ 코로나-19 등으로 정서적 지원사업 시행시기 및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연락처

지역본부명	전 화	핸드폰	팩 스
서울본부	02-309-5177	010-8512-7459	02-309-2012
경기남부본부	031-298-5006	010-8518-7459	0502-384-5371
대전충남본부	042-933-4323	010-8539-7459	0502-384-5396
대구경북본부	053-794-3814	010-8576-7459	0502-384-5406
부산본부	051-324-2464	010-8628-7459	0502-384-5415
광주전남본부	062-606-7638	010-8712-7459	0502-384-5438
경기북부본부	031-837-7601	010-8527-7459	0502-384-5368
인천본부	032-833-6700	010-8536-7459	0502-384-5383
강원본부	033-261-5000	010-8546-7459	0502-384-5384
충북본부	043-265-9575	010-8562-7459	043-262-6551
전북본부	063-214-4743	010-8735-7459	0502-384-5433
경남본부	055-270-0555	010-8649-7459	0502-384-5482
울산본부	052-256-9375	010-8692-7459	0502-384-5481
제주본부	064-755-3110	010-8698-7459	064-723-3120
본사	054-459-7301~6		0502-384-5450

- **신청기간** : 지원제도별로 다름, 연중 수시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가까운 지역본부로 우편접수, 팩스, 방문 가능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서류 양식, 안내문 파일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홈페이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

- 무보험·행소니피해자 지원안내 : ①번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 ②번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kotsa.or.kr / tvsis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안내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지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에 해당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교 재학의 경우만 20세 이하)



피부양 노부모

①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②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대상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월 22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
유자녀	장학금	초등 분기 20만원
		중등 분기 30만원
		고등 분기 40만원
	무이자 생활자금대출	월 20만원
피부양 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 **지원금액** : 월 22만원 (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피부양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피부양 노부모
- **지원금액** : 월 22만원 (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 사고 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초·중·고등 장학금 지원

•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장학종류	재학 (초·중·고)	미재학
지원대상 및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 31조 제 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각 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신청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재학증명서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공단서식)

• 지원금액

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연4회)	지원시기 (연4회)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1학기) 3, 4월	(1학기) 4, 5월
중학생	분기 30만원	(2학기) 9월, 10월	(2학기) 10, 11월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대출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0세부터 만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 **대출금액** : 월 20만원 (매월 말 지급)
- **대출조건**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20세가 되는 달까지)
※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
 - 상환기간** :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 대출기간 5년 미만일 경우 15년,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 희망시 일시상환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0세부터 만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지원금액** : 유자녀(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액 (10만원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원까지 동일금액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만 18세되는 달까지
- **지원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
※ 만 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해 2회까지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중인 자에 한함) 1부



지원신청 공통서류 및 증명서류 발급 안내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 ① 지원신청서 1부 (공단 소정서식)
- ②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⑥ 예금통장 사본 1부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해당 경찰서
	보험금 지급확인원	손해보험사

후유장애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중증후유장애인	장애진단서 및 장애등급결정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생활형편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